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채우진 의원 외 7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3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채우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야외활동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도입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(안 제6조제1항제5호)
- 2)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노인 접근성 고려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(안 제6조제2항)

다. 검토보고(장흥용 전문위원)

본 개정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등 건강체크와 체육 활동, 만남의 공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로 인구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 제1항 제5호를 “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”을 “노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로 변경하고
- 같은 조 제2항 “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”를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○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(노인체육의 진흥)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,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위 법령은 2020년 6월 9일 개정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, 직장체육시설과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 “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○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.4%로 전체 평균 12.7%보다 높으며,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.9%에 불과합니다.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.9일로 평균 1.78일의 1.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마포구의 경우 경로당 158개소를 비롯해 4개의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위주의 실내형 보호프로그램 중심으로 한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, 이에 따라 시설 이용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 활동의욕은 높고 신체 기능이 쇠약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.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하고자 발의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여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관내 공원 내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 설치(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공모사업)와 2024년부터 조성되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공사 시 시설에는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조성은 이용 노인의 특성에 부합하고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시설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, 추후 장소의 활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,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.

참고자료

1. 관련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

제7조(건강증진)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30., 2023.10.4.>

1.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
2.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
3.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4.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5. 보건교육과 건강상담
6.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
7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
8.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
9.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9.30.>

2.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어르신 놀이터 조성현황

- 총 15곳, 10개 자치구
-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사업: 노원(1), 마포(1), 성북(3), 송파(1), 양천(1), 강서·동작(설치예정)
- 자치단체 사업: 광진(2), 서초(1), 종로(5)
- 어르신 놀이터 형태

		
광진구 스마트 놀이터	서초 세대공감 능안어린이공원	종로 지봉골공원

- 서울특별시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진행[유사사업]
 - 추진근거: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
 - 추진기간: 2022년부터
 - 추진배경: 공원, 복지관등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적 특성과 고령층 인지·신체조건을 고려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
 - 사업방법: 자치구의 유휴공간 신청 후 선정되면 조성비 1억원 지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수정안 불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176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28.

발의자 : 복지도시위원회

1. 수정이유

제6조제1항제5호 조문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1항제5호 중 “체육프로그램”을 “체육 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“**체육프로그램**”을 “**체육 프로그램**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건강증진 등)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건강증진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노인을 위한 체력증진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</u>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	<p>제6조(건강증진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- <u>체육 프로그램</u> ----- -----</p> <p>6.·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<삭 제></u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